

의안번호	2200815
의 퇴 인	이정문 의원
회 답 일	2024. 8.19 .
추 계 번호	24D122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 위원 1명을 상임으로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6,500만원, 2030년 3억 8,7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8억 6,500만원(연평균 3억 7,3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설치 (안 제17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365	363	371	379	387	1,865	373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23조의2(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설치), 제23조의3(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금융에 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구축 및 보안사고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에 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구축 및 보안사고 예방·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둠 금융보안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장 제외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23조의2(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설치), 제23조의3(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금융보안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추계에서는 위원장 1명 및 상임위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추계하며, 비상임위원 3명¹⁾에 대한 회의수당²⁾은 일반수용비 안에서 충당 가능한 것으로 보고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사무 공간은 금융위원회 내에 유희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여 임차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³⁾

1) 안 제23조의3(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②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금융 관련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의 정책·기술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사람
2. 대학에서 경제학·경영학·회계학·컴퓨터공학 또는 정보보안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서 금융 관련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의 정책·기술에 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위원회 참석비는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서면심사 10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150쪽)

- 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설치(안 제17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인건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1명, 위원 1명을 상임으로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18억 6,500만원으로 추정
 - (인건비) 위원장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가정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으로 2024년 금융위원회 각목명세서를 참조하여 각각의 연봉을 추정하면, 차관급 1억 4,114만원, 고위공무원 1억 1,355만원이며, 연봉 이외 정액급 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등(이하 “수당”)과 법정부담금⁴⁾을 포함하여 산출함
 - 개정안에서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함
 - 위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급여액에 최근 3년간 공무원 평균 임금상승률인 1.9%⁵⁾를 적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출한 법정부담금을 합하여 인건비를 산출함
 - 연봉 이외 수당은 추계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함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7)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6	2.2	2.2	2.1	2.1	2.1	2.0

4) 법정부담금은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되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정한 연도별 기관부담률은 2026년 13.2%, 2027년 13.3%, 2028년 13.4%, 2029년 13.5%, 2030년 13.6%임

5) 최근 3년간 공무원 임금상승률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5%

[표 1]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연봉 추정: 2024년

(단위: 천원/년)

	연봉액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합 계
위원장(차관급)	141,143	1,680	11,400		154,223
상임위원(고위공무원)	135,506	1,680	7,800	1,168	146,154

주: 차관급 및 고위공무원 직급에 대한 정액급식비는 월 14만원, 차관급 직급보조비는 월 95만원, 고위공무원 직급보조비는 월 65만원, 고위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금융위원회 각목명세서 기준으로 산출함

[표 3] 위원장(차관급) 인건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봉 (A)	161	164	168	171	175	840
부담금 (B=A×부담금요일)	21	22	22	23	24	113
합계 (A+B)	182	186	190	195	199	952

[표 4] 상임위원(고위공무원) 인건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봉 (A)	153	156	159	162	166	796
부담금 (B=A×부담금요일)	20	21	21	22	23	107
합계 (A+B)	173	177	180	184	188	903

- (자산취득비) 추계 첫해인 2026년에만 발생하는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인 『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2020. 6)』에서 산정한 1인당 자산취득비 420만원(2020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적용 후, 인원수 2명을 곱하여 1,004만원(2명×502만원) 산출
- (소요비용) 개정안에 따라 금융보안전문위원회에 위원장 1명, 위원 1명을 상임으로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18억 6,500만원으로 추정

[표 5]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위원장 인건비	182	186	190	195	199	952
위원 인건비	173	177	180	184	188	903
자산취득비	10					10
합계	365	363	371	379	387	1,865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